

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조규영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
번호 2326

발의년월일 : 2018년 1월 25일

발 의 자 : 조규영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김용석(도봉), 문영민, 서윤기

이순자, 유광상, 김인호,

송재형 최판술, 김상훈 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의 안정화·지속화를 위해 ‘혁신교육지구 사업 실태조사 및 성과조사(매2년)’를 「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혁신교육지구운영 종합계획 수립)에 반영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시장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혁신교육지구의 사업 실태조사와 성과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4조 3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를 위하여 혁신교육지구의 사업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조(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를 위하여 혁신교육지구의 사업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을 할 수 있다.</u>